

# 보도자료

(농림부)

- 제공일 : 2005. 12. 28.
- 제공자 : 농림부 협동조합과
- 과 장 : 권 재 한
- 사무관 : 박 정 훈
- 전 화 : 500-1699

이 자료는 2005년 12월 29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제목 : 12.29, 부채경감특별법 개정 법률 공포·시행**  
- 내년 6월말까지 일선 조합에서 신청 받아

□ 쌀 협상, FTA진전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된 「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이 12.29 공포·시행된다고 밝혔다.

○ 이에 맞춰 농림부는 「2006년도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 세부 시행지침」을 29일 최종 확정·발표했다.

□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첫째, '01년도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원금의 10%이상을 당초 만료일까지 상환하는 경우 연리 3%로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고, 그 외는 3년간(금리 5%) 분할 상환하게 된다.

\* 예 : '01.7.21일 1,000만원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은 '06.7.20일까지 원금 100만원을 상환할 경우 900만원을 연리 3%로 5년간 분할 상환

둘째, '01년 지원받은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을 이번 조치에 의해 분할 상환하지 않고, 당초 상환 기한 내에 정상 상환하는 농업인은 납부한 이자액(최대 1년분)의 40%를 환급한다.

\* 예 : '01년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3,000만원을 당초 만료일에 모두 상환한 경우 36만원( $3,000 \times 3\% \times 40\%$ )을 환급

셋째, '01 상호금융대체자금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변경한 농업인이라도 상환 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%를 환급한다.

\* 예 : '01년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3,000만원을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변경한 농업인이 1,000만원을 약정기일 보다 1년 미리 상환한 경우 12만원( $1,000 \times 3\% \times 40\%$ )을 환급

넷째, 이번 대책은 예·적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.

○ 본인 및 배우자의 예금 등 금융자산이 총 부채액의 80% 이상인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,

○ 본인 및 배우자의 예·적금(법 시행일 현재 기한부 예·적금 잔액)이 2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.

\* 예 : '01상호금융대체자금 3,000만원을 가진 농업인이 법 시행일 현재 기한부 적금 5,000만원이 있는 경우 2,500만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□ 이번 조치로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'06년중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'06.6.30일까지, '07년중 만기도래분은 '07.6.30일까지 농·축·인삼협·산림조합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○ 다만, '07년중 만기 도래분으로서 농업인이 희망하는 경우 '06년중 신청 및 대출도 가능하며, 2개 이상의 조합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각 대출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.

## < 지원체계도 >

농업인 신청 → 부채심사위원회 심사 → 대상자 심사 확정 통보  
 → 대출취급기관은 농업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→ 대출실행

